

이에 따라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구를 간문의 기본 위치는 적률 간문의 내층(內層)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적률 다음에 구를 이어졌고, 또 도률의 C군 아랫부분을 보면 도률이 적률의 내층에 위치하고 또 그 첫 번째 간이 구률의 제목간과 연결해 있기 때문에 구률 다음에 도률이 위치한다는 식이다. 장백원(張伯元)도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석독본과는 달리 홍률이 앞쪽에, 호률이 뒤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張伯元 2005).

그런데 이러한 식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간문의 중심 위치를 결정하고 그것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간문이 흩어져 있어서 중심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상대적 위치라는 것도 주로 C군 아랫부분이라는 특정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율문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율문과 제목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율의 순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274호묘에서 출토된 <이년율령> 두루마리의 출토 위치를 율령의 내용에 의해 정리된 석독본의 율문과 비교해 본 결과, 첫째 하나의 조문을 구성하는 두 개 이상의 간의 위치, 둘째 특정 율에 속하는 각 제목간과 율문의 상대 위치, 셋째 율에 속하는 조문들의 순서, 넷째, 전체 두루마리에서의 율의 순서 등이 모두 크게 산란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산란은 결코 외부적 힘이나 충격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토 위치를 중시한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장된 <이년율령>의 모습이 완전한 텍스트라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해석할 수 없다고 접어들 뿐이었다. 같은 274호묘에서 <이년율령>과 함께 출토된 또 다른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D군의 맥서(脈書), E군의 주언서(奏讞書), G군의 개로(蓋廬), H군의 산술서(算術書), I군의 인서(引書)는 완전한 상대

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두루마리 형태를 거의 유지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순서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년올령의 C군과 F군 부분에 일정한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년올령>은 274호묘에 묻힐 당시 이미 착간된 상태로 편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3. 착간(錯簡)과 오자(誤字)

출토위치가 산란된 까닭이 본래 부장 당시에 잘못 편련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해 보았지만, 본장에서는 출토위치 이외에 부장된 이년올령 두루마리 전체의 형식과 내용에도 일정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출토위치가 편련을 복원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한 까닭은 두루마리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3.1. 간의 결락

두 개 이상의 간이 하나의 조문을 이루는 경우 중 상당수가 연결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합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만 연구자들은 그 결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 결합되지 못하는 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sup>21)</sup> 물론 간의 전반부가 잘려져 나간 간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감안 하면서도 내용상 다른 간과 결합할 수 없는 간이 많다. 그 중 몇 가지

21) 적외선 촬영으로 잘려진 간의 글자가 석독되면서 일부 간 사이의 결합관계가 확인 되기도 했다. 79간이 도중에 간문이 끊긴 경우였지만 X3간과 연결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석독된 잘려진 간 14개 중 연결 가능성이 제시된 것은 X3와 X4 두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母妻子者, 棄市. 其悍主而謁殺之, 亦棄市; 謁斬止刑(?)若刑, 爲斬·刑之. 其誑詈主·主父母妻(44, F186B、F1B) □□□者, 以賊論之(45, C270)
- ② 以縣官事毆若詈吏, 耐. 所毆詈有秩以上, 及吏以縣官事毆詈五大夫以上, 皆黥爲城旦舂. 長吏以縣官事詈少吏(46, F11) □者, 亦得毋用此律.(47, F15B、C)
- ③ 告, 告之不審, 鞠之不直, 故縱弗刑, 若論而失之, 及守將奴婢而亡之, 篡遂縱之, 及諸律令中曰與同法、同罪, 其所(107, C294)
- ④ □、御史請諸出入津關者, 皆入傳□□吏(?)里□長物色□瑕見外者及馬識物關舍人占者, 津關謹閱出入之. 縣官馬勿識物498(C122) 者, 與出同罪. ·制曰: 可. 499(C129)

①과 ②는 정리소조본에 각각 하나의 율문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적외 선본에는 출토위치가 떨어져 있다는 왕위(王偉)의 견해를 받아들여 44간, 45간, 그리고 46간과 47간을 모두 별도의 간으로 분리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한 기본적 이유는 간을 연결시킬 하등의 논리적 관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네 개의 간은 각각 별도의 간문이 이어진다는 뜻이지만, 현재까지 이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최소한 네 개의 간이 결실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③도 정리소조본에는 하나의 율문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첫 번째 글자인 ‘고(告)’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고’자에 붙어있는 중문부호가 잘못 기입되었을 가능성, 앞쪽 간이 결실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이균명(李均明), 팽호(彭浩), 장건국(張建國)의 견해와 이를 수용한 <이년율령여주언서>는 107간 앞에 121간을 연결시켰다.<sup>22)</sup> 이럴 경우 ‘고’자 문제가 해결되어 “율문의 논리와 잘 맞는다”거나 “잘

22) 121간 “城旦舂、鬼薪白粲有罪(遷)、耐以上而當刑復城旦舂、及曰黥之若刑爲城旦舂、及奴婢當刑畀主, 其證不言請、誣”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21번간에 ‘급왈경지(及曰黥之)’ 부분과 의미상 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앞쪽에 또 다른 ‘왈(曰)~’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어지는 107-108간에 거의 동일한 구문으로 “율령중왈(律令中曰)~ 급왈(及曰)~”이라는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 그 결정적인 증거이다. 결국 121번간 앞에도 또 다른 간이 결실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④는 정리소조본이 하나의 율문으로 처리했으나 경도대본 및 양건(楊建 2002)등이 지적한 대로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외선 본에서는 499간을 500-501간 뒤에 연결시켰다. 그러나 그 경우 다시 498간이 도중에 끊겨지므로 여기에 연결되어야 할 별도의 간문이 결실된 셈이 된다. 본래 정리소조본은 500-501간을 도중에 중단된 조문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간문이 결실된 것으로 보았다. 결국 499간을 어느 쪽에 연결시키든지 어느 한 편은 간이 결실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 3.2. 상이한 율문의 동일 간 연속 기입

한편 내용상 명백히 별도의 율문임에 틀림없는 내용이 하나의 간에 이어져 쓰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官爲作務、市及受租、質錢、皆爲緡、封以令、丞印而入、與參辨券之、輒入錢緡中、上中辨其廷。質者勿與券。租、質、戶賦、園池入錢、429(C160) 縣道官勿敢擅用、三月壹上見金、錢數二千石官、二千石官上丞相、御史。不幸流、或能產拯一人、購金二兩；拯死者、購一兩。不知何人、剡狸而430(C167)瓊之。流者可拯、同食、將吏及津齋夫、吏弗拯、罰金一兩。拯亡船可用者、購金二兩、不盈七丈以下、丈購五十錢；有識者、予而令431(C166)自購之。 432(F73)
- ② 匱金四兩罪罰金二兩、罰金二兩罪罰金一兩。令、丞、令史或偏先自130(F32) 得之、相除。 131(F28)

① 429간부터 430간의 ‘이천석관상승상어사(二千石官上丞相御史)’까지는 관(官)이 조(租), 질(質), 호부(戶賦), 원지입전(園池入錢)을 받을 때의 규정을 기록하고 있으나, 429간의 ‘불행류(不幸流)’ 이후의 내용은 수운(水運)과정에서 익사(溺死) 및 물자 유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앞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한편 정리소조는 ②와 같이 130간과 131간을 연결시켜 두었지만, 정리소조본, 경도대주석본, 적외선본 모두 130간의 ‘령(令), 승(丞), 령사(令史)’ 이전과 이후는 다른 내용이며 잘못 붙여 쓰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sup>23)</sup>

### 3.3. 동일 율문의 별개 간 분리 기입

<이년율령>에는 하나의 간에 짝막한 법률 규정만이 기입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법률 규정과 그에 연관된 부속 규정 혹은 예외 규정이 이어진다. 이러한 부가 혹은 예외 규정은 본 법률 규정과 하나의 율문으로 처리되어 연속으로 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간은 명백히 하나의 율문에 속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간에 기입된다.

① 鞫(鞫)獄故縱、不直、及診、報、辟故弗窮審者，死罪，斬左止爲城旦，它各以其罪論之。其當繫城旦舂，作官府償日者(93, C34)罰歲金八兩；不盈歲者，罰金四兩(94, C35)。

□□□□兩，購、沒入、負償，各以其直數負之。其受賂者，駕其罪二等。所予減罪重，以重者論之，亦駕二等。其非故也，而失不95(C36)

23) 專修史學《二年律令》研究會，『張家山漢簡<二年律令>譯注(四)-告律·捕律·亡律』，『專修史學』38, 2005은 비록 130-131간 연결에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역지로 “令·丞·令史가 공범을 모두 체포하면 그 죄를 없애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告不審’이나 ‘有罪先自告’ 이전에 ‘偏先自得’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 ② 賜不爲吏及宦皇帝者, 關內侯以上比二千石, 卿比千石, 五大夫比八百石, 公乘比六百石, 公大夫、官大夫比五百291(C214)石, 大夫比三百石, 不更比有秩, 簪褭比鬪食, 上造、公士比佐史. 毋爵者, 飯一鬪、肉五斤、酒大半鬪、醬少半升. 292(C213)司寇、徒隸, 飯一鬪、肉三斤、酒少半斗、醬什分升一. 293(C218)
- ③ 不爲後而傳者, 關內侯子二人爲不更, 它子爲簪褭; 卿子二人爲不更, 它子爲上造; 五大夫子二人爲簪褭, 359(F132)它子爲上造; 公乘、公大夫子二人爲上造, 它子爲公士; 官大夫及大夫子爲公士; 不更至上造子爲公卒. 360(F131)
- 當士爲上造以上者, 以適子; 毋適子, 以扁妻子、孽子, 皆先以長者. 若次其父所, 所以以未傳, 須其傳, 各以其傳361(C244)時父定爵士之父前死者, 以死時爵. 當爲父爵後而傳者, 士之如不爲後者. 362(C243)
- ④ 以祝十四章試祝學童, 能誦七千言以上者, 乃得爲祝五更. 大祝試祝, 善祝、明祠事者, 以爲冗祝, 冗之. 479(C231)不入史、卜、祝者, 罰金四兩, 學俱二兩. 480(C230)

①은 정리소조나 적외선본 모두 93간에서 98간까지 하나의 조문으로 이해한 것이지만, 93간의 사진을 보면 긴 공백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다시 간을 바꾸어 관련 규정을 기록했던 것이다. ②의 경우는 정리소조가 원래 하나의 조문으로 처리했으나, 간의 사진을 보면 292간 마지막부분에 약 6자의 공백이 있다. 하지만 내용은 모두 ‘불위리급환황제자(不爲吏及宦皇帝者)’에게 주는 경우로서, 292간의 관내후(關內侯)부터 그 이하 293간의 사구(司寇), 도예(徒隸)까지 연속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하나의 율문임에도 불구하고, 292간 마지막 부분에 공백을 두고 다시 293간만을 별도의 단간으로 기입했다. ③의 경우도 정리소조는 359-362간까지 모두 하나의 내용이므로 이를 하나의 율문으로 묶었던 것인데, 360간의 마지막 부분에 5~6자 정도의 공백을 두고 361간을 새로운 간으로 처리하였다. ④도 역시 내용상 하나의 율문임에도 불구하고 479간의 마지막

부분에 5자 정도의 공백이 있고, 480간은 새로운 간에 기입되었다.

### 3.4. 오자(誤字), 이체자(異體字) 및 자구(字句) 탈락

이상이 주로 간의 서사과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간 안에 쓰인 글자에서도 일정한 오류가 확인된다. 명백한 오류인 경우도 있고, 이체자가 기입된 경우도 있다. 이체자 자체가 문제될 필요는 없지만, 동일한 글자가 이년율령 안에서 다른 글자로 쓰인 점은 주의할 만하다. 더욱이 『상군서(商君書)』에 법령을 한 글자라도 덧붙이거나 빼다면 처벌한다는 기록이라든가,<sup>24)</sup> 운몽수호지 진률 중 위률(尉律)에 의하면 매년 율령을 대조해야 했음을 고려하면,<sup>25)</sup> 이러한 오자와 이체자의 존재는 이년율령을 완전한 텍스트로 보기 힘들게 한다. 일부 간문에는 자구가 탈락된 사례도 확인된다. 석독본은 이러한 오자와 자구 탈락을 [ ]으로, 이체자를 ( )로 표시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사례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 ① [ ] 請許增減券書，及爲書故許弗副，其以避負債，若受賞賜財物，皆坐贓爲盜。其以避論，及所不當(14, C7)[得爲]，以所避罪罪之。所避毋罪名，罪名不盈四兩，及毋避也，皆罰金四兩。(15, C8)
- ② 爵戍四歲及繫城旦舂六歲以上罪，罰金四兩。贖死、贖城旦舂、鬼薪白粢、贖斬宮、贖劓黥、戍不盈96(C58)
- ③ 而皆其官之事也，及病，非出官在所縣道界也，其守丞及令、長若眞丞存者所獨斷治論有不當者，令眞令、長、105(C42)

①은 관용어로 사용된 ‘부당득위(不當得爲)’ 중 ‘득위(得爲)’가 탈락되었던 사례이다.<sup>26)</sup> ②는 글자가 잘못 기입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작수(爵

24) 『商君書』定分篇 “有敢剽定法令·損益一字以上，罪死不赦.”

25) 『雲夢睡虎地秦墓竹簡』199간 “歲讎辟律於御史。尉雜.”

戊)의 ‘작(爵)’은 연자(衍字)이다. ③의 경우 정리소조본은 ‘급병비지관(及病非之官)’으로 석독했던 것을, 경도대본과 적외선본에서 ‘급병(及病), 비출관(非出官)’으로 고쳤다. 그 까닭은 ‘출’자가 ‘지’자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겠지만(陳偉 2006), 동일한 텍스트에 여러 이체자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정본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다.

#### 4. 서사와 편년의 과정

##### 4.1. 율문의 선별

<이년율령>이 전한초 시행되었던 모든 율령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간 배면(背面)에는 ‘이년율령’이라고 적혀 있고, 또 526간에는 ‘율령이십□종(律令二十□種)’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 28개의 율령 제목간이 확인된다. 마치 ‘이년율령’이 율령28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년율령>에는 특정 율명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까닭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 <이년율령>의 내용이 선별되었기 때문이다. 진률의 도관(都官) 규정에서 보듯 관리들은 자신이 필요한 법률을 베껴 사용했다.<sup>27)</sup> 진관령의 간 머리부분에는 번호가 1부터 23까지 매겨져 있다. 진관령의 완전한 텍스트에는 적어도 23번까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년율령>에는 이 중 3번~8번, 10번, 11번, 14번, 17번~20번이 없고, 비록 일부 잘려나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도 분명 일부 령문(令文)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6) 그밖에도 354간, 367간, 472간, 485간, 492간, 506간에서 일부 자구가 탈락된 예를 찾을 수 있다.

27) 『雲夢睡虎地秦墓竹簡』 186간 內史雜 “縣各告都官在其縣者, 寫其官之用律.”



## 4.2. 구두부호의 기입

그렇다면 <이년올령>은 247호묘 묘주가 생전에 사용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을까? 바꾸어 말하면, 247호 묘주는 무덤에 부장된 526매의 <이년올령>을 지참하고 이를 참조했던 것일까? 이 문제의 단서는 죽간에 기입되어 있는 구두부호이다(金秉駿 2009).

중국의 전통 서사방식에는 구두부호가 없다. 구두부호는 글을 처음 쓰는 자가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를 읽는 사람이 기입했던 것이다. 거연한간이나 돈황한간 등에서 확인되는 일차 행정문서에 구두부호가 거의 없다는 점, 종이 서책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동아시아 고대의 문헌자료에는 구두부호를 기입하여 출간하지 않았다. 『사기』 활계열전에는 “한 무제가 상서된 글을 위로부터 읽어 가다 멈추고는 그곳에 乙 표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sup>28)</sup> 그 주석에 인용된 『풍속통(風俗通)』에는 “乙 표시를 했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에 붉은 색으로 글에 乙形으로 구두점을 찍는 것과 같다”고 했다.<sup>29)</sup> 또 『설문(說文)』의 <フ, 구식야(鉤識也)>에 대한 단옥재(段玉裁)의 주에도 “구식(鉤識)이란 것이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구록(鉤勒)으로 구두점을 찍는 것과 같다”고 지적되어 있다.<sup>30)</sup> 모두 서적이거나 문서를 읽으면서(讀) 표기했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년올령>에 기입된 구두부호도 일단 현에 보관되어 있는 정본을 서사한 이후 이를 읽으면서 기입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현의 정

28) 『史記』卷126 滑稽列傳 “至公車上書……人主從上方讀之，止，輒乙其處”

29) 『風俗通』 “輒乙其處，謂止絕處乙而記之，如今人讀書，以朱識其所止作乙形，非甲乙之乙也”

30) 『說文』 「フ，鉤識也」 段玉裁注 “鉤識者，用鉤表識其處也，褚先生補滑稽傳，東方朔上書，凡用一千奏牘，人主從上方讀之，止，輒乙其處，二月乃盡。此非甲乙字，乃正一字也，今人讀書有所鉤勒卽此。”

본에 부호가 기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까닭은 <이년율령> 내의 구두부호 기입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종종 잘못된 곳에 기입되기 때문이다. 즉 문장 사이에 기입하기도 하다가 구절 사이 혹은 명사 사이에도 기입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당연한 곳에 표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기입되기도 한다. 가령 284간의 ‘천석지육백석(千石至六百石)√리사관자(吏死官者)’에는 ‘천석지육백석’과 ‘리사관자’ 사이에 구두부호가 잘못 찍히기도 하였다. 93간의 ‘기당계성단용(其當繫城旦舂)√작관부(作官府)√상일자(償日者)’의 경우도 ‘작관부’와 ‘상일자’ 사이에는 구두부호가 기입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묘주가 사용하면서 이차적으로 이를 기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4.3. 초사(抄寫)

구두부호가 차후에 읽으면서 기입되었다면 먹의 색감이나 굵기 등에서 본문의 글자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년율령>의 사진본 및 적외선 사진본을 보면 <이년율령>의 본문과 구두부호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문 역시 맨 처음 서사된 상태가 아니라, 일단 구두부호가 기입된 이후의 상태를 저본으로 하여 누군가 다시 한 번 초사했다고 보아야 한다. 구두부호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보면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즉 죽간의 글자가 먼저 쓰이고 구두부호가 나중에 기입되는 것이므로, 글자와 글자 간격이 일정하고 글자와 부호 간격은 촘촘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종종 글자와 글자 간격은 크게 떨어져 있고 글자와 부호의 간격이 정상적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초사자가 구두부호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베껴 쓴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지하듯 구률의 제목간인 81간에는 구률이라고 쓴 뒤 간의 하단 부분에 정흠서(鄭欸書)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구률 부분을 정흠이라는 자가 조사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년율령>에 조사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례는 이것뿐이다. 그러나 조사자의 이름이 1간 배면에 쓰인 ‘이년율령’이라든가 526간 ‘율령이십□중’과 함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률이라는 특정 간에 기입되었다는 것은 다른 율 부분을 또 다른 조사자가 기록했을 가능성을 남겨둔다.

『후한서』에 의하면, 주경(周磬)이라는 자가 임종을 맞으면서 유언하기를, 『요전(堯典)』 한 편을 서사하여 관 앞에 넣어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sup>31)</sup> 이에 따르면 주경이 소유하고 있었던 『요전』을 부장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주경 스스로 조사한 것도 아니다. 그의 유족이 유언에 따라 직업적인 조사자를 구하여 그로 하여금 『요전』 1편을 베끼도록 했던 것이다.

3장에서 지적한 <이년율령>의 문제는 대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즉 간의 결락, 상이한 율문의 연속 기입, 오자, 이체자 및 자구 탈락은 묘주가 사용했던 원본을 여러 조사자들이 나누어 베끼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중 율문을 별개의 간에 분리 기입했던 문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조사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조문에 귀속되는 것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조항이 시작되는 부분을 새로운 간에 썼던 것은 조사의 저본이 되는 조사자가 원본에 표시된 부호를 잘못 이해하고 조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사 과정의 오류는 무언가 그러한 오류를 가져오게 하는 까닭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년율령>에는 구두부호와 달리 묵정(墨釘)이라고 불리는 부호가 표시된 사례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後漢書』卷39 周磬傳.

- ① 盜賊以短兵殺傷其將及伍人，而弗能捕得，皆戍邊二歲。卅日中能得其半以上，盡除其罪；141(C16)得不能半，得者獨除。■死事者置後如律。大疾臂臑股胫或誅斬，除。與盜賊遇而去北，及力足以追逮捕之而官□□□□□逗142(C67)
- ② 皖老各半其爵徭，□入獨給邑中事。■當徭戍而病盈卒歲及甌，勿攝(攝)。407(F24)
- ③ ■御史以聞。■制496(C133)曰：可。497(C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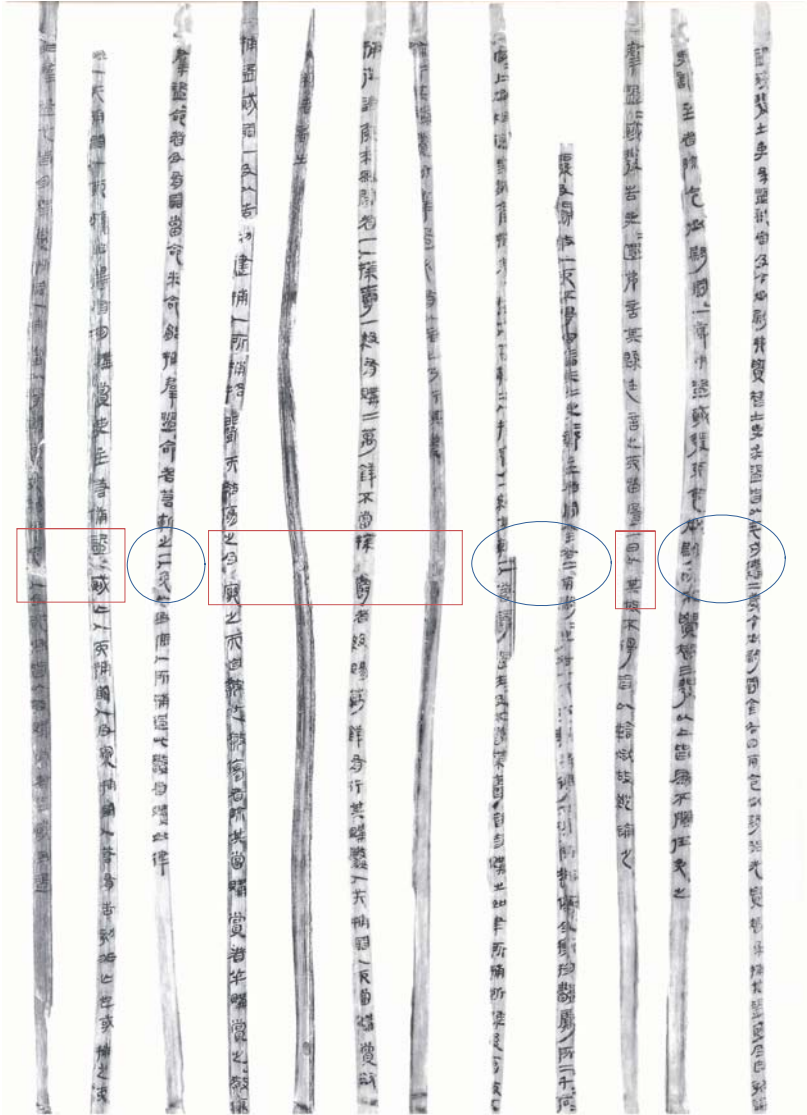
①에서 목정 앞부분은 군도(群盜) 발생 이후 체포 의무 및 그 기한에 대한 규정이고, 목정 뒷부분은 체포 과정 도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다. 즉 목정을 이용하여 하나의 율문에 속해 있으나, 별도의 추가규정임을 표시했다. ②에서 보이는 목정도 환로(皖老)의 요역과 관련된 부가 규정이다.

한편 ③진관령에 표시된 목정은 제조(制詔)가 확정되는 여러 단계별로 목정이 표시되었다. 그런데 ③에서는 목정으로 표시되었던 ‘제왈가’ 부분이 본래는 별개의 한 개 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는 절차를 보여주는 책서(冊書)로 거연한간 「원강오년조서책(元康五年詔書冊)」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서는 어사대부가 황제에게 상소한 안건을 황제가 인가한 뒤 승상에게 집행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중 황제의 인가 부분인 ‘제왈가(制曰可)’가 별도의 간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다(大庭脩 1982). 즉 원래는 제조(制詔)의 단계별로 간이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정리하면서, 별개의 간이었음을 목정의 방식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③에서 나타나는 진관령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①과 ②도 원래 별도의 간에 기록된 것을 하나의 간으로 묶어서 기록되면서 목정이 표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처럼 목정이 적혀진 조문이 다시 정리되어 하나의 조문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목정이 생략되게 되고, 이것이 <이년율령>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율문처럼 목정 표시 없는 부가 조항 형식으로 남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초사자는 이년율령 조문 중 아직 목정이 남아있었던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본래 별도의 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표시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새로운 간에 기입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 4.4. 편련

진한시대 서사방식은 빈 간을 먼저 배열하고 이를 끈으로 편련한 다음, 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鄭有國 2008). 이 경우 간독에 쓰인 글자는 끈으로 편련된 부분을 피해서 기록되며, 끈을 제거하면 그 부분은 자연히 공백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먼저 간독에 글자를 기입하고 난 뒤 끈으로 편련을 한다면, 편련된 부분에 공백이 아닌 글자가 기입되기 마련이다. <이년율령>에는 일단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백원의 계산에 따르면(張伯元 2005: 68), 간의 폭이 0.5~1.0cm 정도이므로 평균 0.7cm로 잡고, 전체 간수가 526개이므로 모두 편련된 간독을 펴면 368.2cm에 해당된다. 모든 간을 이렇게 길게 묶어두고 서사했다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간 별로 서사를 한 뒤 편련했다는 점은 간의 편련 부분의 공백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는 포물에 해당되는 144간부터 155간의 사진인데, 이 12개의 간 중에서 146간, 149간~152간, 154간, 155간 모두 7개 간은 편련 부분에 일정한 공백을 찾을 수 있는 반면, 144간, 145간, 147간, 148간, 153간 모두 5개 간은 편련부분에 빼곡히 글자가 기입되어 있다. 그런데 공백이 있는 간과 공백이 없는 간이 섞여 있는 배치라는 점에 주목해 보자. 즉 공백이 있는 간은 먼저 편련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149간부터 152간까지 4개의 간을 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앞뒤에 있는 148간과 153간은 모두 먼저 서사를 했던 간들이다.



<그림 2> <이년율령> 144간-155간



<그림 3> 거연한간 <建武三年十二月候栗君所責寇恩事>

따라서 4개 간은 편련을 해서 서사를 하고 그보다 앞쪽 2간 및 뒤쪽 1간은 따로따로 서사를 한 뒤 편련을 했다는 셈이 된다.<sup>32)</sup>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편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면, 편련의 공백이 남아있는 것도 결국 편련하기 전에 먼저 서사를 하되 편련이 지나가는 부분에 공백을 남겨둔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먼저 간별로 서사를 한 뒤 편련을 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미리 몇 개의 간을 모아 편련을 해서 서사를 한 부분과 간별로 서사를 한 부분을 다시 끈으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일한 247호묘에서 출토된 주언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E군에 속하는 주언서는 비교적 정연한 순서로 편련되어 있다. 모두 22개의 안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묶여있고, 그 안례는 한 고조 11년 8월부터 시간 순으로 춘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蔡萬進 2006: 39-41). 이렇게 정연한 순서 중

32) 144간보다 앞선 간의 편련 부분을 보면, 143간은 공백이 없고, 다시 142간은 공백이 있으며, 141간은 공백이 없다.



일부 간독들의 좌우 배열순서 및 상하가 뒤집혀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이는 배열순서가 뒤집힌 부분이 원래 편련이 되어 묶여있는 상태로 다른 간들과 다시 편련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 뒤집힌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 하나의 참고자료는 거연한간 <건무삼년십이월후속군소책구은사(建武三年十二月候栗君所責寇恩事)>이다(그림 3). 이 안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도향색부(都鄉齋夫)가 당사자의 진술을 받아 현에 보고한 원서(爰書)의 내용과, 거연현(居延縣)이 보고를 받은 후 갑거후관(甲渠候官)에 ‘사이서(寫移書)’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公文)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서의 서사 형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첫째 원서와 공문은 각각 완전히 다른 서체로 쓰여있고, 둘째 원서가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공문은 두 줄로 기록되어 있다. 셋째, 원서는 중간에 공백 없이 이어서 쓰인 반면, 공문은 두 곳의 편련이 지나가는 장소에 공백을 두고 기입하였다.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에 작성한 원서와 공문 두 개의 문서를 나중에 하나의 책서로 묶었다는 것이다.

<이년올령>의 편련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미리 편련을 해서 묶여 있는 간독에 기록을 한 것과, 간별로 따로따로 기록한 것을 마지막에 끈으로 함께 묶었다는 것인데, 이 때에 착간의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발생했을 것이다. 일단은 올별로 편련을 한 뒤 다시 추가로 편련을 하는 방식으로 번잡함을 줄였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2장에서 지적한 편련의 문제는 대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두 개 이상의 간이 하나의 조문을 구성하지만 연결해 있지 않는 문제, 동일한 올명에 귀속되지만 그 올문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 않는 문제, 올 내 조문의 순서가 뒤집히거나 다른 조문과 섞여 있는 문제, 그리고 올의 순서가 일정치 않은 문제는 모두 편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33)</sup> 수백 개

33) 단순한 착오인지 혹은 抄寫의 순서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었



에 달하는 개별 간을 순서에 맞추어 편련하는 작업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미리 편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구률의 경우 일부 구간만 두루마리의 상하에 두 줄로 배열된 것은 구률을 편련하면서 미리 편련되어 묶여 있던 부분을 다른 율문과 이어서 배치하지 못하고 한 바퀴 정도 지난 뒤에 편련했던 것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 5. 결론

본고는 <이년율령>의 텍스트 외적 비판을 통해 <이년율령>의 서사 과정을 복원해 보고자 했다. 특히 시의도로 제시된 간의 출토위치와 <이년율령>의 편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그 결과 율령의 내용으로 판단컨대 하나의 조문임에 틀림없지만 출토위치는 연결해 있지 않는 문제, 또 하나의 율에 속하면서도 조문이 정연하게 배열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문제, 또 율 내 조문의 순서가 뒤집히거나 다른 조문과 섞여 있는 문제, 그리고 율의 순서가 일정치 않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러한 산란 상태는 단지 편련이 끊어졌거나 또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이년율령> 내에서 발견되는 각종 다른 오류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즉 단지 편련의 연결만이 아니라 일부 간에 결락되어 있기도 하고, 상이한 율문이 하나의 간에 연속으로 기입되거나 때로는 동일한 율문이 여러 간에 나누어 기입되는 경우, 그리고 오자 혹은 자구 탈락 현상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이년율령> 두루마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묻힌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거들이다.

---

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247호 묘주가 실제로 사용한 올령 정보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일 수 없다면, 묘주의 뜻에 따라 전문 조사자에게 정보의 일부를 베끼도록 하고 그것을 무덤에 묻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후한 주경의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이년올령>에 기입된 구두부호도 이를 증명해준다. 구두부호가 본문 글자와 동일한 색감과 굵기로 된 점, 또 묘주가 <이년올령>을 읽으면서 글자 사이에 구두부호를 기입했던 것이지만, 이를 베끼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구별없이 취급되면서 글자와 부호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던 점 등이 그 증거이다. 이들 조사자 중의 하나가 구름의 제목 간에 쓰인 정흠이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의 결락, 조문의 분리 기입, 오자와 같은 일차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조사의 과정은 먼저 편련을 하고 기록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먼저 기록한 뒤 편련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후자의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 뒤 이것들을 다시 모두 묶어 편련하게 되는데, 이 때 올별 혹은 특정 기준으로 일부가 분절된 후 묶여지기도 한다. 출토위치에서 확인된 편련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요컨대 장가산한묘 247호묘에서 발견된 <이년올령> 두루마리는 전한초기 실시되었던 올령 전체도 아니며, 247호묘 묘주가 생전에 직접 사용한 정보 그대로도 아니다. 무덤에 묻기 위해 묘주 혹은 그 유족에 의해 정보의 일부가 조사되고 이를 적당히 편련하였던 것이다. 무덤에서 출토된 문자자료 중에는 실제로 사용하던 서적류가 부장된 경우도 많지만, <이년올령>과 같이 그 일부가 조사되고 부정확하게 편련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겠다. 기왕의 적지 않은 연구가 부장될 당시 <이년올령>이 완정했을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고, 그 때문에 각각의 출토위치를 근거로 새로운 간문 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각각의 소속 올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나아가 <이년올령> 전체에서 각 올의 순서를 한초 올령의 순서와 등치시키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밝힌 것처럼

<이년율령>의 서사과정과 부장상황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전제는 교정되어야 한다. <이년율령>의 석독과 간의 결합, 율의 귀속, 율 내의 순서, 전체 율의 순서는 그 출토위치가 아니라 내용의 정합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앞으로 불필요한 논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

34) <이년율령> 율의 순서가 전한초기 텍스트로 정리되어 유통된 율령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은 『한서』 형법지 및 『진서』 형법지, 『당률소의』 등 문헌자료의 율명 순서가 <이년율령>의 출토위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부심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자를 등치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진관령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즉 석독본들은 율과 령이 구분된다는 문헌기록에 따라 <이년율령> 중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고 있는 반면, 시의도를 보면 진관령은 <이년율령> 두루마리 가운데에 대략 행서률과 사률(賜律) 사이에 편편되어 있다. <이년율령>의 출토위치가 문헌기록의 율령 순서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참고문헌

- 김경호(2011), 「秦·漢初 行書律의 내용과 지방통치」, 『史叢』 73.
- 윤재석(2008),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上海古籍出版社, 2007년)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1집.
- 이명화(2011), 「秦漢 女性 刑罰의 減刑과 勞役」, 『중국고중세사연구』 25집.
- 이성규(2003), 「秦·漢 형벌체계의 再檢討 - 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집.
- 임중혁(2011), 「漢初의 律令 制定과 田宅制度」, 『중국고중세사연구』 25집.
- 金秉駿(2009), 「如何解讀戰國秦漢簡牘中句讀符號及其與閱讀過程的關係」, 『簡帛』 4輯.
- 大庭脩(1982), 「居延出土의 詔書冊」, 『秦漢法制史의 研究』, 創文社.
- 富谷至 編(2006),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研究: 譯注篇』, 朋友書店.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2001),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
- 若江賢三·畑野吉則(2010), 「張家山漢墓竹簡『二年律令』의 接續と 配列について—一三七四·三八一及び二六九簡について」, 『人文學論叢』 12(愛媛大學人文學會).
- 楊建(2002), 「張家山漢簡<二年律令·津關令>簡釋」, 『楚地出土簡帛思想研究』 (一).
- 王偉(2006), 「張家山漢簡《二年律令》編聯初探」, 『簡帛』 第1輯.
- 李均明(2002), 「<二年律令>中應分出<囚律>條款」, 『鄭州大學學報』 2002-3
- 李力(2004), 「關於<二年律令>簡93-98之歸屬問題的補充意見」, 『出土文物研究』 6輯.
- 李力(2009), 『張家山247號墓漢簡法律文獻研究及其述評(1985.1-2008.12)』, 東京外國語大學.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2006),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 文物出版社.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2001),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 文物出版社.

- 張建國(2004), 「張家山漢簡<具律>121簡排序辨正 - 兼析相關各條律條文」, 『法學研究』 2004-6.
- 張伯元(2005), 「《二年律令》編聯札記(四則)」, 『出土法律文獻研究』, 商務印書館.
- 專修大學『二年律令』研究會(2003~2009), 「張家山漢簡『二年律令』譯注」(一)~(十二), 『專修史學』 35~46.
- 鄭有國(2008), 『簡牘學綜論』,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陳偉(2006), 「讀<二年律令>札記」, 簡帛網, 2006年1月17日.
- 蔡萬進(2006), 『張家山漢簡《奏讞書》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彭浩(2004), 「談<二年律令>中幾種律的分類與編聯」, 『出土文獻研究』 6輯.
-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2007),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古籍出版社.
- 荊州地區博物館(1985), 「江陵張家山三座漢墓出土大批竹簡」, 『文物』 1985-1.

원고 투고일: 2011년 5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25일

계재 확정일: 2011년 5월 26일

中文摘要

<二年律令>의出土位置和編聯

- 爲了復元書寫過程 -

金秉駿

本文欲经过文本分析来复原张家山二七四号墓出土的《二年律令》。这次本文运用的方法是把张家山汉简整理小组所公开的《出土位置示意图》与内容上整理好的《释读本》来进行比较分析。结果，我能发现几点：(1) 虽内容上归属于同一条，出土位置互相远离 (2) 虽内容上属于同一律令，排列顺序混乱 (3) 每个律令不在一起，与其他律令混在一起 (4) 律令的相互顺序也不一致。从具体的出土位置上来看，这种散乱的排列状态绝对不可能只是由于编连绳子的断裂、或是从外部的冲击而发生的。此外，《二年律令》有更多的错误。比如，(5) 有些简缺了，只有前部或后部留下了 (6) 有时，不同律文写在同一个条里 (7) 有不少的误字，而且有些句子遗漏了。总之，在张家山二七四号墓埋葬《二年律令》时，这些卷本来就不是完整的。

不过，墓主生前使用过的律令绝对不可能这么不完整。因此，张家山二七四号墓出土的《二年律令》应是根据墓主的遗嘱让专家抄写正本的一部分。后汉时期的周磐是属于比较明显的例子。同时，《二年律令》上出现的句读符号也能够证明这个事情。句读符号原来是读者阅读的时候根据自己的原则进行标记的。所以，句读符号应该标记在文字和文字之间，也

就是说文字和符号的间距缜密。但是，《二年律令》上不少的符号是好像文字似的标记的。结果，符号和文字之间距是像其他文字和文字之间距差不多的。像这样抄写专家，其中之一就是具律题目简出现过的人名、郑欤。前面所说的第二种错误(5, 6, 7)很可能都是这时发生的。

编联过程可分为两个方式。第一，先把空简编联后抄写。第二，先抄写后编联。张家山《二年律令》上都出现了这两种方式。当然，先抄写后编联，意味着要将每简一一排列，这需要十分注意。先编联时也一般以几简为单位作成的，不是以律名为单位。仔细看《二年律令》的话，能看出来每律上第一种和第二种方式都混在一起。前面所说的第一种错误(1, 2, 3, 4)可能在这种编联时所发生。

总之，张家山二七四号墓出土的《二年律令》并不是西汉初期实际上实行过的完整本，也不是二七四号墓主生前亲自使用过的原本。为了专门埋葬，墓主或遗属令专家抄写正本的一部分后把它编联的。虽然不能排除将原本埋葬的其他可能，我们要注意的，至少张家山《二年律令》在经过抄写和编联的过程中已经含有许多的错简和错字等问题。如此我们才能够重新确认《二年律令》的基本前提，即《二年律令》的编联、篇章或顺序是基于律令上的内容逻辑决定的，将来我们才免得白费心思。